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2월8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8)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3)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0)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3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3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4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4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4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38)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7)
5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6)

상정된 안건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4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4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4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4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4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4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4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3)	4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0)	4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4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4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5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5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5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5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5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5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5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5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5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5
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5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5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5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5
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5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5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5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5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5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5
3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5
3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5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5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5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5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5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5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5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5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5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5
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5
4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5
4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5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5
4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8)	5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6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6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7)	6
5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6)	6

(14시08분 개의)

○소위원장 고민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8)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3)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0)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6)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3)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2)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4)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5)
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5)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3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3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3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4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4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4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4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38)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7)

5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6)

(14시09분)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 5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는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간소화 절차를 도입해서 간소화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교직원공제조합은 보험업상의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법에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조에서 준용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급여금 청구의 편의성 및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만 보험업법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적용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한 내용이 있어서 6페이지 수정의견으로 반영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7조의 경우에는 병원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내용들이라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준하여 똑같은 처벌 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부칙의 시행일을 2025년 10월 25일로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시점을 시행일로 잡았으나 이미 경과했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보험개발원과 별도 계약 체결도 있어야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테스트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기초실장님,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래도 시작이니까 한번 인사말씀이라도……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12월 8일 자 오늘 자로 발령받은 교육부 기초실장 설세훈입니다.

중대한 시기에 와 가지고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부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해서, 그 자구 수정은 전문 위원께서 수정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6쪽 이하의 수정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들이 별로 큰 이견이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날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김대식 의원님과 고민정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학·석·박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학사·석사 통합과정, 석사·박사의 통합과정에 대한 근거만 두고 있고 석·박 통합과정은 160개 대학 2138개 전공에서 운영 중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도입은 조기 인재 양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대식 의원안에서는 해당 대학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에도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학위 연계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박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등교육법 29조의3과 33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과정은 신입생의 선발 단계에서부터 운영하는 과정이고 연계과정은 재학생 등을 새롭게 뽑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용입니다.

통합과정과 관련된 수업연한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학·석·박 통합과정에 대해서 수업연한을 8년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현행법 31조 제2항에 따라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향후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수업연한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연계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연계과정에 대한 수업연한도 같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는 조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용입니다.

9페이지 내용은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에 입학한 사람들 중에서 중단한 사람에 대해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는데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부칙 사항으로 김대식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고민정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시행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칙에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나 학위 연계과정 명문화하는 것 그다음에 통합과정 수업연한 규정하는 것 그다음에 과정 중단자에게 학위 수여하는 내용 그리고 부칙 내용까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게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학생이 들어가서 8년 또는 몇 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석사에 지원하지 않고 박사에 지원하지 않고 한 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까지 다 하게 해 주는 제도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이걸 읽어 보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교육기간 단축이 주목적입니까? 학사·석사·박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 이유의 핵심이 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이 개정안에서는 학·석·박을 통합해서 죽 가는 내용하고 학사 졸업하고 석사과정으로 바로 가고 그다음에 박사로 가는 것을 연계해서, 그건 학교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건데요 두 가지 내용을 다 제도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공계 기초학문 분야의 인재 양성이 필요할 때 학생들이 졸업해서 그다음 학위과정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민 없이 죽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죽 가도록 해서 단기간에도 박사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적으로만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모든 학생이나 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재 양성의 경로를 마련해 놓는 것이고 구체적인 적용은 학교별로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좀 모호해 보여요.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학사·석사·박사가 학력별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학력에 대한 기준들인데. 그렇지요? 어느 나라에서 석사했다 박사했다 어느 정도 공부했구나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걸 하나로 묶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인재 양성 과정에서 인재들에게 정확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뭉뚱그려지는 것 같고 교육시간을 줄이겠다 그래서 아까 2년 반 이상 단축하겠다고 수석전문위원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8년 과정에서 2년 반을 빼면 5년 반 과정이 남는데 그러면 5년 반 동안 학사·석사·박사를 다 취득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최대 그렇습니다, 최대 5년 반이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6년으로 할 수도 있고 7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현재 학·석사 통합과정이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석·박사 통합과정도 제도가 있는데 학·석·박 3개의 학위과정을 통합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학·석·박 학위를 5년 반 안에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제도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두세 가지 이것은 굉장히 큰, 물론 학·석이 있고 석·박은 어떻게 보면 대학원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학·석·박을 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 학생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 졸업할 때 학·석·박 과정에 입학했다고 하면, 학교의 스케줄대로 따라가면 학사·석사·박사 학위까지 5년 반 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입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사를 뽑는 기준이 다르고 그렇지요? 우리나라 학사는 수능·수시·정시 등등 하잖아요. 그리고 학위가 끝나면 석사·박사를 뽑는 과정은 수능하고 별개로 학부 때의 공부 또 여러 가지 논문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석사·박사를 진학시키는 게 상식적인데.

입에 아직 안 붙는데 이 학·석·박 통합과정을 수능·정시·수시 과정으로 다 뽑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마련을 해도 사실 이게 보편적으로 대학에 시행이 될지……

○**조정훈 위원** 아니, 수요가 없는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하실 텐데, 그러면 수능·정시 보는 과정에서 이 특정 과목의 특정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정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통해서도 대학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길을 열어 놓으면 학생을 선발해서 학부과정을 거치면서 이 학생이 정말 석사·박사에 진학해서 잘할 학생인가를 대학이 평가를 하게 되고, 학생도 원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이 학사를 마쳐 보니 나는 이 경로로 계속 가지 않겠다 하면 그냥 학사 학위만 받고 졸업하는 것도 열려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한번 들어 보시고.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사실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내놨을 때도 실효성 여부를 좀 고민하기는 했었던 건데, 이게 신기술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조기에 빨리 성과를 내서 인재를 양성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교육의 질 저하라든지 학위체제의 혼란 같은 것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나주대나 전남대 같은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정량적 지표라든지, 이를테면 조기 취업률 이런 것은 정량 성과가 될 것이고 중도 탈락률이나 학생 만족도 이런 것은 정성 지표가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폴로업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학에서는 학·석·박 통합과정이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연계를 통해서 바로바로 진학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AI 같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보다 저희가 좀 빠르게 인재를 양성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모든 학생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재능 있고 연구까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대학에서 연계과정 하는 것은 다 폴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저는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카이스트나 서울대 공대에서 나름의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 빨리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인재를 조기 육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새로운 길을 열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수요보다 미래를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추

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야말로 어떤 분야든 우수 인재를 빠른 시간 안에 배출해 내자 하는 의미의 법안인 것 같습니다. 큰 이견들이 없으시면, 아마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실제로 정말 좋은 인재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가 폴로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문제도 충분하게 보완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김민전 위원** 저는 연계과정이든 통합과정이든 이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학생에 따라서는 같은 과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집중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는 학위 받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학위 받고 나서 연구할 힘이 남아나지 않고 좀 지쳐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특히 인도 학생들이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받는 데 20대 초반에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월반들을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조로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수업연한을 얼마 단축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석박사 연계나 통합과정 같은데, 석사·박사를 따로 하면 석사 하고 논문 쓰고 박사 하고 논문 쓰고 또 그 각각을 리콰이어먼트 하는 과목이 있고 이렇지만 2개를 통합하면 석사논문을 안 쓰고 막바로 박사학위 논문 쓰게 되는, 박사 과목을 더 듣고 그 대신 양쪽에서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과목은 그냥 웨이브 해 버리고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 년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에는 굉장히 동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8항 9항도 같은 법률 개정안이므로 제9항 심사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하고, 여러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5년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2005년 1차 개정 2021년 2차 개정을 통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성을 조금 더 확보하고 동시에 투명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사립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현행법이 시행된 게 2022년부터인데 2022년 3월 22일에 이 조항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아직 심리 중인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시행한 지가 몇 년 안 됐고요. 또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내용 중에는 필기시험 위탁 자율화만이 아니라 시험 시행 자체를 재량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조정훈 간사님 법안인데 제가 또 반론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도 하면서 사립학교 관련된 것을 많이 봤었는데, 저도 순천에서 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재단은 너무 훌륭하신 재단이어 가지고 지금 전교조 지부장 하신 분이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 너무 당당하다 보니까 ‘그냥 전교조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하세요’ 이 정도로 깨끗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하고 계시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어쨌든 그때 교직원 채용할 때 친인척 채용에다가 돈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것을 막을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공채 방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공유해서 한 사안이라, 이게 지금 모범적으로 그나마 잘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옛날로 되돌려 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 좋은 사립학교들 또 대부분의 사립학교 재단이나 선생님들도 차라리 이렇게 공정하게 교육청에서 주관해 주는 게 우리도 속 편하고 좋다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 오면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모의 선택권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특히 이 사학의 책무성과 자율성에 대한 두 가지 모두 우리 사회가 지지해야 될 중요한 가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또 찬반이 극심했습니다만 어쨌든 22년부터 사학의 새로운 교사를 모집할 때 사학이 관여할 수 없고 시·도교육감이 위탁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교육위에 와서 만나는 많은 사립 중고등학교 분들을 보면 사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들의 건학이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법인체지요. 건학이

념을 위해서 설립자가 또는 설립자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그 건학이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학교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라면 다양한 건학이념을 허용해서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학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 또는 수단은 건학이념에 동의하고 양질의 교육 역량이 있는 교사일 것입니다.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가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학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을 믿고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양질의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타당한 요구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학이념이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다는 전제로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비리도 있었고 부정도 있었던 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의 그리고 공동발의한 분들의 내용들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되 자율적으로,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졸업하신 고등학교 같은 곳에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이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다 받아들이면서 교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을 맡겨 달라라는 주장이십니다.

언뜻 보면, 물론 교육과 일반 사업은 다르겠습니다만 특정 기업이 또는 비영리단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업이 종업원이나 근로자를 뽑을 때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국가에서 배정해 주겠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국가의 요구는 백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준에 있어서 필기시험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교사의 신념이 중요한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은 사학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들면서 다른 여러 나라의 규정들을 봤는데 사학의 교사를 공공기관이 뽑아서 제공해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이게 정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서 이제 사학에게 재량권을 줘도 되겠다 이게 맞는 방법이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학의 교사를 국가가 뽑아서 A·B·C는 이 학교로 가고 D·E·F는 저 학교로 가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 맞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걱정도 있기 때문에 5년간 법령위반을 한 경우에는 지금 제도처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마치 낙태법처럼 그것은 국회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위헌판결이 나면. 그렇지요? 또 합헌판결이 나더라도 재량권을 교사에게 주는 것이 위헌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은 너무 소극적 자세 같아요.

그러니까 최교진 장관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사학들의 행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게 진심이라면 이것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강경숙 김민전 위원님 순서대로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할 텐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발령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학교 선생님들 경우에도 전체를 다 뽑아 가지고 발령식으로 이렇게 분배를 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 않지요?

○조정훈 위원 그래도 누구를 뽑을지를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백승아 위원 교육청에서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뽑아서 국공립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을 발령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라고 하니까 그다음 백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이 법안은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서 2021년 8월에 국회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사 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후퇴하면 안 되고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제도 만들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니깐 이때도 사학의 자주성 인사권 최대한 존중해서, 모든 절차를 다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딱 1차, 객관적 평가인 1차 필기 시험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면접 이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가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립학교가 자율성 자주성 보장받아야지요. 그런데 동시에 13조가 넘는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재정을 돈을 지원받았으면 그것에 맞게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도, 저는 이 정도는 합리적이다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책무성 지켜야 되고 관리 감독 받는 것은 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21년 법 개정할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청에 위탁해서 공개전형 실시한 학교가 60%가 넘습니다, 정확히는 64.6%.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상당수 법인이 교육청 위탁으로 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렇게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에 한해서 위탁하는 이 과정에서 혹시나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적발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1차 단계에서요?

○백승아 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기존의 법은 교육감에게 1차를 위탁을 했

는데 그렇게 위탁함으로 해서 생긴 문제점이 적발된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백승아 위원** 없지요?

그리고 현재 사립학교 법인에서 교원 채용할 때 1차는 교육청에 위탁하지요. 그런데 2단계 3단계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1차 필기시험 이후에도 사립학교가 충분히 본인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교사였던 입장에서 보면 사립학교에 지원할 예비 교원들도 이 법은 싫을 것 같아요. 좀 더 공정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규 교사 선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다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유사한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다 하셔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 절차에서 필기시험 이후의 절차는 사립학교 법인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채용권이 보장되고 있다라는 게 여기 4쪽에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원 자격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여러 채용은 사실 사립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학의 자율성이라든지 인사의 자주성은 보장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제가 조정훈 간사님과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위탁 필기시험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과정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고 경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채용을 하는구나 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그것이 이 법안, 그러니까 위탁 채용제도가 도입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법을 실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실시하면서 공정 채용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다수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훈 위원** 제가 추가발언 한 번만 더……

○**소위원장 고민정**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예, 기록에 남길게요.

이 법과 관련해서 최근 사학법인을 운영하는 곳에서 80개 넘는 학교에 설문조사를 돌려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보내 드릴 텐데.

첫째, 교육청에서 1차 임용 후 몇 배수 교원을 보내 주셨냐? 우리 법령상 5배 이상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배수의 교원을 보내 주셨냐? 평균 4명이에요. 법령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5배 이상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왜 4명밖에 안 보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1차 4명 이렇게 보내 준 후보 중에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만 있는 경우가 있었나? 70%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떡하냐? 이분들이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를 대부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그들의 자유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만약에 이것 법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5배수 이상 보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건학이념에 맞는 후보 한 명도 없고, 법이 아니라면 이런 현실들은 수정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 부분은 보완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학교법인 이사장의 입장에서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들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학부모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마 보통은 종교, 그러니까 불교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학교 기독교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학교 이런 곳인 경우에는 종교가 그쪽인 선생님들을 아무래도 선호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가 불교 학교든 기독교 학교든 상관없이 선택하거든요, 혹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건학이념이라는 것보다는 양질의 선생님이 와 주시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고요.

개정안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등록금 납부에 관해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정사항은 학교에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과 비교해 보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지금 기숙사비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카드 납부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학생들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하도록 하는 대학이 기숙사 기준으로 252개 중에서 한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인 등록금과 비교해 봤을 때 현행법 제11조의 규정과 조문 체계 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개정안 내용과 현행법 비교한 내용인데 이것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관련 내용입니다.

제1항을 보시면 등록금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개정안 내용은 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과 비교해서 조문체계의 수정이 필요하고, 부처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서 대학들이 제출한 의견이 4페이지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비용 소요 등을 제기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을 마무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시행이 늦춰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숙사비 관련해서 학생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개별 사정이 있고 행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금에 준해서 2회 이상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개정안 내용이 6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도 1년 경과한 날부터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6쪽에 보면 교육부 수정의견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할 수 있다’로 고친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을호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가 되는데 하나는 분할납부가 있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납부 방법인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하더라도 총액을 확정하는 의무 조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할납부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 등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보니까 기숙사는 학교와 달리 퇴사가 빈번해서 환불 처리·관리를 위해서 어렵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분할납부를 함에 있어서, 기숙사는 제 생각에는 한 학생이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오면 새로운 학생을 급하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손실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불멘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분할납부도 2회까지는 허용하자.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50만 원 50만 원, 그중에 퇴사하면 50만 원 안 내도 되는 거다 그 취지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드로 납부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수입에 약간의 손실이 생깁니다. 기숙사비도 마찬가지로여서 저희가 신용카드 납부도 열어 놓기는 하지만 분할납부도 2회 이상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는 실질적 분할납부를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부담하느냐 학교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인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2회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2회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2회 이상으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신용카드 분할납부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한 학기를 3개월로 분할한다고 하면 한 학기 비용을 결국 내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 방을 계속 사용하든 하지 않든. 그런데 분할납부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안 오는데요. 그냥 분할납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학기를 3개월로 하면 중간에 살다가 1회 차만 내고 나갔을 때 빈방 생기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한테 의무가 없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기숙사 비용이……

○**교육부차관 최은옥** 학교는 좀 어려운데요.

○**김민전 위원** 학교가 어렵게 되면 결국 기숙사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학교가 어렵기는 한데 기숙사는 대체로 대기수요가 있는 편이고요, 바깥의 숙소보다는 있는 편이고 그리고 카드 납부를 하더라도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 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학생의 편의를 좀 더 고려해서 등록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민전 위원** 그런데 등록금의 경우에는 한 학기를 분할납부해도 결국 한 학기 다니는 거거든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군대 가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없지만 기숙사는 뺏다 넣었다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래서 학교에서 더 어려워 합니다, 등록금보다는.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분할납부하거나 했을 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것을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셨는데 정을호 의원님한테는 얘기가 됐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동의하셨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려 했는데……

○박성준 위원 간단하게 하나……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이견은 없는데요. 이것을 왜 학칙으로 정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근거는 법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박성준 위원 학칙으로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박성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부령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요? 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학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부차관 최은옥 대학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근거를 두고 2회 이상 분할납부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은 사실 좀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약간 대학에 자율성을 두는 것이 저희는 더……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숙사가 학교 중심이냐 아니면 학생들의 복지 중심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의 복지 증진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면 학생들에게 맞춰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관리도 잘하고, 요즘에 사실 금융제도가 워낙 발달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50일이면 50일 45일이면 45일 딱 해서 계산해 주는 게, 모든 카드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 그 시스템만 갖춰져 있다고 하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 되면 교육부령으로 다 일괄적으로 해서 학교마다 적용하는 게 낫지 학칙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이것을 수용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살펴보기에는요 등록금은 일단 모든 학생이 다 내니까 모든 학생한테 다 적용이 되니까 교육부령으로 하는데 기숙사비는 사실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칙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정훈 위원 추가 질문. 박성준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법이 아니고는 달성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면 위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안 할 것 같으니까 법으로 강제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선택 조항으로 바꾸면 그냥 다시 도돌이표 돌려서 원위치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법으로 의무 조항으로 해서 일시에 바꾸도록 하고 못 바꾸는 대학은 위법 상황이 발생하는 게 될 텐데요. 법에 일단, 지금은 근거도 없다가 법에 근거를 두면 대학은 그래도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가 대학에 그렇게 촉구할 근거도 생기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가 보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이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게 맞냐, 그냥 학칙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위 안에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 금지 같은 경우도 이미 학교 규정으로 다 하고는 있는데 법안에 올림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들이 학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게끔 교육부가 좀 더 선도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팬찮으시면 이쯤에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항도 같은 법률 개정안이므로 제9항 심사 후에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치 적용 전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침해학생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기간이 한 21일 정도 걸리고요. 결정을 한 후에 교육장에 통보해서 교육장이 적용하기까지가 한 14일 정도 걸리는데 분리조치는 실무적으로 한 7일 정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조치 기간보다 더 과하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실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의 긴급조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절차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침해학생에게 긴급처분을 하기 전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긴급조치로서 봉사라든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가해학생의 출석일수에 산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7페이지 이하 수정의견으로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문체계상 개정안은 11항부터 13항까지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9항부터 11항까지로 반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의견청취 절차라든가 출석일수 산입을 12항 13항에 규정해서 수정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수정의견을 살펴보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그 수정안을 보고 저희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처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짚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해 주셔도 좋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항만 바뀌고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의견청취절차를 12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출석일수 산입 관련해서는 13항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는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나머지 내용은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만 표현을 좀 수정제안을 드리면 12항 보면 ‘학교의 장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니한 경우에는’ 이런 게 말이 너무 확 와닿지가 않아서 교원지위법이랑 학폭법을 찾아봤는데 거기랑 동일한 문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이런 표현이 훨씬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관련 학생 의견을 듣는 건데 제가 이해해 보면 학생이 교사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했을 때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역교원보호위원회가 검토를 하는 거고 그 기간이 있어서 7일 이후에 21일 전에 한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선생님과 학생이 같은 교실 안에 있는 불편함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민감한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지역교원보호위원회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분리해라,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무 일 아니다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교육을 진행한다라는 결론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교원지위법이나 학교폭력법에서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학생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의 취지, 수정안을 받아 들였을 때 여러 이유로 ‘나는 내 교사에게 상해·폭행, 성폭력범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지역교원보호위원회에서 다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결론이 나기 전에 분리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학생에게 일종의 낙인효과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교원지위법 등에서는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그 조항이 들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법이 만약에 수정안대로 통과되면, 그런 주장을 하는 학생의 진술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제안하신 대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도, 학생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보장을 하는데 의견을 들어서도 교장이 긴급조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정훈 위원 의견을 듣고 필요 없겠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건 교장의 재량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교장선생님 한 명의 재량이에요? 그렇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일단은 긴급조치니까 위원회를 열거나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여기는 학생에 대해서만 긴급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부 모라든가 다른 민원인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법을 발의를 해 났는데 원래는 병합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정이 아마 내일 되니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럴 때는?

○조정훈 위원 내용이 뭔가요?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만, 교권 침해를 학생에 대해서만 분리한다, 긴급 조치한다인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와서 또는 이웃 주민이 학교 와서 선생님에 대해서 행패를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해 줘야 되는데 빠져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학생만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악성 민원인, 학생 외에도 하는……

○박성준 위원 병합심리를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것은 지금 어쨌든 절차가, 이것은 이미 다 진행이 됐으니까요.

○김문수 위원 지금 상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고민정 그것은 또 순서가 오는 대로 제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5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두 개정안의 취지가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심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제7항은 강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학원 등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 및 레벨테스트가 실시됨에 따라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저해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서 과도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의 중요성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한 점 등에 비추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개정안의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번 내용은 안 제2조 4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의 규정에서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 1호에 따른 유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2조 1호에 따른 유아는 현행 정의 규정에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대상으로 유아를 명시함으로써 이 부분까지 같이 관리 감독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1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조문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재 규정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재 규정은 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고 23조에 따른 과태료가 있는데 학원의 경우에는 등록말소,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교습소 역시 교습소의 폐지, 개인과외교습자도 과외교습의 중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의 금지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금지 역시 지금 이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면 높은 수준의 반을 배정받기 위해서 또 과도한 수준의 조기 사교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과잉금지원칙과의 조화 방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위를 금지할 때 행정적 제재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예를 두는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이 있고 이 내용이 5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교육부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마는 12조의 1항에 단서를 두면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어서 7페이지, 부칙 사항을 마무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내용은 시행일과 관련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규정하는 부분은 특별한 이견 사항이 없고 적용례 부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조를 두면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해서 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위반해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강경숙 의원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김문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영유아 대상으로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정안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5쪽에 있는 단서 조항을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제시하신 부칙 적용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잘하셨는데 보통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진단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규정하면 되는 거지 앞에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니까……

○조정훈 위원 멋있잖아.

○박성준 위원 멋있어요?

원래 문구를 이렇게 많이 쓰나요? 아까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속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수정의견에 저는 동의하는데 보통 이런 문구를 많이 쓰냐는 거지요. 대부분 일반적 문구로는 안 쓰는 것 같아서, 법률용어도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국회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알기 쉬워야 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다만, 진단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맥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겠냐 이 얘기지요.

그냥 ‘실시할 수 있다’, 쉽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저희가 아무래도 이전에 있던 것들을 조금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지.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 걸로.

○박성준 위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그러하지 안 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읽기에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심플하게 그냥, 법적이거나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딱 적어 주는 게 좋

지.

○소위원장 고민정 법조문에 이런 문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고쳐도 끝이 없는데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개정안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그러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오늘 말이 많네요. 일부러 말이 많은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인권위원회에서 아동의 건강권과 발달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동의가 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법이 유아까지 포함하는 건데 유아가 3세부터 만 7살까지, 다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3세로 내려갈수록 ‘아, 이건 너무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가까워 올수록 이거는 어느 정도 취지가 있지 않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정확한 표현이 뭐였지요? 시험 및 레벨 테스트 실시가 허용되는 거지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취학 전까지 어린이인데.

그리고 아까 어디 있었지요, 4페이지인 것 같은데. 입학으로서의 평가는 안 되지만 입학 이후에 분반하기 위한 평가는 허용된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 거지요, 지금.

○조정훈 위원 그게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과외교습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과외교습자와 이 개인과외교습을 지원하는 학부모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 개인과외교습자의 입장에서는 분반이란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일대일인데.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못하는지, 일반 외국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용이든 그러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학생 평가를 못 하게 하는 행정조치라는 게 현실적 입니까? 이거 어떻게 적발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고발하지 않으면, 과외교습자가 스스로 자수하겠습니까? 굉장히 비현실, 이게 과연 작동할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적발은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아무래도 7세 미만의 학생이니까 아무리 개인교습이라 하더라도 관찰하고 면담하면 애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 수 있는데 레벨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자, 그러면 이 법안이 강경숙 의원님 법안이지요?

○강경숙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원래 원안은 모집할 때 그다음에 수준별 테스트 두 가지를 다 금지하는 법안을 내셨는데 수정안에는 수준별 테스트는 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모집하는 시험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지요?

○강경숙 위원 예, 지필시험. 아이들에게 지필시험 보는 거는 최소한 폐지하자.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들어갈 때 모집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강경숙 의원님은 동의하시는 거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강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교습자 그거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넣은 것이지 개인과외교습자가 무슨 수준별 테스트하고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들어갈 때 무슨 지필고사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것은.

○조정훈 위원 그걸 빼지요.

○강경숙 위원 아닙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이렇게 형평성 면에서 그걸 넣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현실에서.

○조정훈 위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의 배정을 위한……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개인과외 선생님이 학생을 받을 때 이 친구를 그냥 수준만 보고 내가 가르칠게 말게 이걸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꼭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은 모집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까지는 특히 유아는 할 필요는 없다, 너무 과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현상이 없으면 필요 없는데. 그런 현상이 없으면 이런 법안 자체가 필요 없는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걸 보면 이게 현실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4세 5세 7세 고시라는 그 내용, 저는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많이 들어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조기교육이 지금 초등학교를 뚫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극단의 조치잖아요. 그 취지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요이 땅 하는 시간을 경쟁의 시간을 초등학교까지는 멈추겠다 이런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국가가 선언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유아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목적이 공부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아이만 모집을 하겠다거나 잘하는 애들끼리만 하는 그걸 막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교습과외자를 여기서 적용시켜야 될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분야인데요. 아까 이 법이 통과되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악 미술 무용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태권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보습학원이 아니라 그런 예체능 학원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아이가 태권도를 얼마나 하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도 테스트를 못 해요?

○소위원장 고민정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좀 말씀 주시지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입니다.

평가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취지는 뭐냐 하면 첫째는 유아들이 학원을 들어

갈 때 레벨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른 학원을 다니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조정훈 위원** 그거는 입시·보습·언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데 특정 태권도학원을 들어가고 다른 태권도학원에서 준비하는 학생은 없거든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그래서 저기 단서에 보시면 관찰……

○**조정훈 위원**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5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관찰·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체능계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분반을 할 수 있도록 해 놔습니다. 그 조항이 바로 이외 조항입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고민정** 태권도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태권도 해 보는 거는 관찰이니까 그건 테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지필시험.

○**조정훈 위원** 지필이라는 게 종이로?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지필시험.

○**소위원장 고민정**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요새는 유아들도 이렇게 지필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아마 그 세대 분들이 아니셔서.

○**조정훈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걸 보기는 봤는데 법안에 지필시험을 금하는 게, 저는 평가 금지는 알았는데 지필시험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법률에? 지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법률에? 수정안의 몇 항, 몇 조에 있지요?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시험 또는 평가라고 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시험 또는 평가랑 지필시험이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시험이 항상 지필입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바로바로 답을 좀 주시면, 제가 답답해서.

그러니까 시험·평가 안에는 지필이 있고 그다음에 실기가 있고, 크게 두 부류일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정훈 위원** 면담도 있고 많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실기 부분은 관찰과 면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필기에 해당되는 것은 안 되게끔 한다는 것이고. 지필이라는 단어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만 예외 조항 안에 면담과 관찰을 넣었던 이유는 실기 부분은 볼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열어 놓으신 거고, 다만 지필 관련해서 필기시험과 관련해서는 금지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지필시험을 금지한다는 단어가 굳이 없어도 이 조문만으로도 그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교육부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정리됐지요?

○**조정훈 위원** 아니오.

○**소위원장 고민정** 안 됐어요?

○**조정훈 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마 9페이지에 그게 녹아 있다고 주장하실

것 같은데 맞지요, 그 내용이? 누가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12조 2항. 그렇지요? 그러면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인데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 해선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필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되는데 ‘다만,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시험 중에 관찰·면담은 가능하고 그 외에 비관찰 비면담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혼란을 부를 것 같은데요. 법이 저는, 강경숙 의원님이 잘 만드셨지만 너무 승승, 승승인데요.

○**강경숙 위원** 승승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양보한 겁니다. 이거는 모집뿐만 아니라 반 배정하는 것까지를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일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 모집해서 새끼 학원을 거쳐서 그다음 학원을 가야 하는 레벨테스트가 너무나 지금 사회에 횡행하고 이것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미룰 때도 아닙니다. 유아 사교육비 얼마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32조가 넘습니다. 아니, 유아 사교육까지 포함해서 3조 이상인데.

그래서 제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 거기까지는 하고 시험은 아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예외 규정까지 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레벨테스트에 너무 아이들이, 아까 발달권 놀이권 건강권 얘기하셨는데 인권위원회 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말이 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아까 개인교습 그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실은 일대일만이 아니라요 일대다도 있고 공부방처럼 활용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뺄 수는 없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말씀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강경숙 위원님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취지가 현장에서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는 하지만 지금 5세 또는 유아의 학부모들이 국가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교육경쟁을 먼저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과연 이 법 하나로 그 현상이 없어지리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어요.

김영호 위원장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대학입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하도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는데, 저는 이 법 구조를 객관적으로 읽어 보고 또 제가 굳이 빙의를 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구멍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특히 고민하는 게 입시·검정 및 보습, 소위 공부잖아요, 영어로 시작되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음악 미술 무용 체육 같은 모든 걸 다 지금 안 되게 만드는 거지요? 예외 없지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분야 모두 다 적용을 하는 거지요? 맞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왜냐하면 음악 미술 무용 같은 건 5세 7세면요 달란트가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천재 같은 애들은 피아노 치고 막 날아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못 하게 할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섬세하게 법을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요, 차관님?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유치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백승아 위원님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학부모의 입장으로는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현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레벨테스트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분을 안 넣었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이들의 경쟁은 중학교부터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초등학교 때, 사실 초등학교 1·2·3학년들이 레벨테스트 봐서 ‘너는 지금부터 고급반에 못 들어가는 아이야, 너는 제일 밑에 단위에 있는 아이야’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천재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 포텐이 터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등학생까지 하기에는 독이 이미 너무 많이 터져 버려 있으니 그러면 그것을 더 낮춰서 진짜 마지막 단계, 유아만이라도 못 하게 하자라는 의미여서 저는 사실 레벨테스트도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들 사이에서 혹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예 단념하고요 그냥 초등학생부터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법안을 내신 강경숙 의원님께서 반대가 있으시니 그러면 모집할 때만이라도, 그것만 금지하게끔 하는 것으로 후퇴가 많이 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 법안으로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이게 현실에서 과연 작동 가능하나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태권도나 예체능이나 피아노나 이런 것들은 면담으로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다만’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도 천재적인 그림 아니면 피아노 발레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필기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만 유아들만 제외하자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의견도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김준혁 위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다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학원들이 일단 못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학원들이 학부모를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꾸 그렇게 자기네 학원에서 특별한 아이를 이런 걸로 뽑는다라고 해서 그냥 막 학부모들이 가게 되고 이러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초등학교 이전에는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부에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느꼈던 심정인데 교육부가 설명을 잘 못 해요.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 준비 좀 잘해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지 고민정 위원장님이 다 설명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민정 위원장님 실력만 막 북돋고 증명되는 것,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

요.

딱 이야기하면 착착착착, 이런 것 대답 못 합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고 싶어요, 정말.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 법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3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도 법안을 찬성하는 부분이 제가 가장 최근에 어린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들은 다 불안 마케팅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구를 가져와서 다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야 ‘어머 이 정도였어, 우리 애가?’ 그래서 다 학원을 다니게 만드는 수법이거든요. 사실 잘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결정적 시기, 만 3세, 이때를 지나면 발달 시기를 놓친다’, 그러면 저희 애들은 바보 천치게요? 저 막 놀면서 키웠습니다, 정선 관사에서. 다 푹푹하게 학교생활 잘하고 있고요. 불안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 법안하고 51항도 저희가 심사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51항 전문위원 설명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51항은 김문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안은 학원 등록사항에 모집시험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오른쪽에 있는 박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강경숙 의원님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개정안의 취지와 모집시험을 법률에 규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에 있어서 강경숙 의원님 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에 한정해서 적용을 했었고 김문수 의원안은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해서만 규율을 하고 전체 학습자에 대해서 모집시험을 등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등록사항에 학교급 및 학습자 모집시험을 포함시켜서 주요 학습 대상자의 연령, 모집시험 여부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고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모집시험을 등록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등록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등록제도에서는 교습과정이나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록제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실효성을 위해서는 등록 대상이 무엇인지, 모집의 실시 여부인지 시험의 형식과 절차 등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원법에서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또다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집시험 사항이 변경 등록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재와 관련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학원법 개정안 내용 상단의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행정처분 내용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는 비교적 엄중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3쪽의 현행법 제6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등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교습과정에 대해서 변경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은 학원법 시행규칙의 모집시험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개정안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법이 똑같은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의 하나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등록 여부가 있고 두 번째는 규정 대상을 김문수 의원님처럼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해서만 할지 아니면 강경숙 의원안처럼 개인교습 대상도 다 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둘 다 수용하면 충돌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김문수 위원님, 이게 같은……

○김문수 위원 둘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충돌되지 않냐고요, 이 두 개가. 강경숙 의원님은 개인과외교습자까지 적용하자는 거고 김문수 의원님은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자고 하시는 건데, 하나를 선택해야지요.

○김문수 위원 포함해도 됩니다, 개인교습자도.

○조정훈 위원 그러면 강경숙 의원님 법안하고……

○김준혁 위원 두 안이 같이 조정되면 되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교육부 의견은 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수정안이 있는 거지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입니다.

학원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등록 여부로 바꾼 이유는 학교급별 등록 여부인데요. 학교급별로 해야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파악할 수가 있고 모든 학원들이 다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데만 일단 등록 여부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규정을 할 거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서식을. 그래서 등록 서식을 개정해서 교습과정에다가 등록 여부의 서식 칸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모집 선발 시험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것을 개념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시행규칙의 서식란에다가 모집 선발이란 학생들 모집을 할 때나 또는 반 배정 편성을 하거나 이럴 때 보는 시험 또는 면접 등을 포함해서 행정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부령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시지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예.

○소위원장 고민정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두 개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온 내용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정부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하는 내용들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강경숙 의원님 안하고 같이 병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민전 위원 두 개 다 다음에 같이 하시면 되지 않나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앞서 강경숙 의원님 안은 유아들이 그런 시험을 안 보게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의원님의 법안은 등록을 할 때 시험을 보냐 안 보냐를 쓰게끔 만들어서 안 보게끔 좀 유도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전혀 실태를 모르니까 아예 등록할 때부터 우리는 테스트를 한다 안 한다를 기록하게 해 놓으면 관리하기 좋지.

○소위원장 고민정 실태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강경숙 의원님 안하고 김문수 의원님 법안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은 아니에요, 큰 카테고리만 같지만.

그래서 강경숙 의원님 안은 수정된 것으로 저희가 통과를 하고 김문수 의원님 것은 지금 교육부령으로도 할 수 있다는 교육부 답변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더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문수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1항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8항과 9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지영 의원님과 정을호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위 수여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학위 수여를 대학원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지영 의원님 안은 학위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수여도 함께 취소하도록 의제하는 내용이고, 정을호 의원님 안은 해당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석사학위 취소 시에 석사학위 취소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학위 수여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 52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권익 제한 조치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지영 의원님 안 중에 상급 학위의 수여도 같이 취소하도록 의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학위 제도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취지지만 일률적인 취소 의제 시에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로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해당 학위를 활용하지 않고 상급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정을호 의원님 안 관련해서는 통지가 어렵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 제시가 있고 이 내용은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자료 8페이지, 대학원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서지영 의원안 제29조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학위 수여 취소 등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라는 내용을 두는 겁니다.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과 연계된 사항으로 현행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현재로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대학원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칙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내용입니다.

적용례 부분 사항인데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 시행 당시 수여된 학위에 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없던 불이익한 처분을 개인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학위 수여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위를 취소하면 상급 학위 모두 취소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당 학위를 활용하지 않고 상급 학교에 진학한 경우 일률 취소하는 것이 돼서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을호 의원님 안에서 대학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을 대학에 의무 부과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위원회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도 두 가지, 6개월과 적용례 모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앞에 있는 학위 취소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학위과정이라는 것은 각 단계마다 입학의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지 평가체제 이런 굉장히 독립된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 아까 여기 되게 정확한 예가 나와 있던데 3쪽에 보면 공학사를 취득한 사람이 행정학과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C대학의 행정학 석사학위 입학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하여튼 공학사까지도 같이 취소해 버리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입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성이나 정량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학부 부정의 연장선으로 간주를 했을 때 자동 취소하는 이런 적합하지 않은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실효성이 그리고 너무 과잉 입법이 된다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지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 경우는 지금 학사학위가 2개고 그다음에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사학위 하나 있고 석사학위 하나 있는데 학사학위가 취소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가 있다? 이걸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취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학위는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나요? 관리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외국 박사학위 받은 경우에 저희 연구재단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고, 기본적으로 학위 자체는 대학에서 관리합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학교에서 학위를 취소했다라고 하면 그 취소한 것을 교육부에 공지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면 연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학위 수여자도 대학이고요 학위 취소자도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나 이걸 누군가가 신고 내지는, 아주 유명한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사학위가 취소되었으니 석사학위도 취소해라 이런 압력을 그 학교에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학교가 인지하게 되겠지만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김민전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저도 같은 취지의 궁금증인데요. 초·중·고등학생들도 학교폭력이라든지 혹은 아동학대,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이런 정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연계되어 있지가 않아서 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대학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학을 갔을 때 그 두 번째 학교에서 이 친구가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위가 다시 취소가 됐는지 어쨌는지를 시스템상으로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려면 별도의 법에 근거를 뒤서, 이걸 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모든 대학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더 줘야지 그게 가능하겠네요, 알아내는 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학생한테 사전에 개인 동의를 받든지.

○**소위원장 고민정** 이게 서지영 의원님 정을호 의원님 법안인데, 서지영 위원님 어떠세요?

○**서지영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 수정의견을 드리고 교육부랑 논의를 시도했는데 교육부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운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 복수 학위인 경우에 상급 학위로 진학한 경우까지 다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잉 규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 단서 조항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러한 단서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미리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는 회피하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 학위가 근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두면 얼마든지 이 법안의 취지는 살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보완적으로 입법을 다시 할 생각이 있고요. 다시 한번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대학원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앞의 상단 부분하고 사실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연계돼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대학원위원회를 법률적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건 뭐냐면 사실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학부의 학위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원 학위가 유지되고 있고 각 대학마다 서로 개인정보 동의라는 문제로 계속 팽퐁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법안의 대학원위원회 구성만이라도 해서 일단 받을 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것마저 불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대학 간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팽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대학도 끊임없이 이메일 보내고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제도화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행정절차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맞지요. 거기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이 건은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대학원위원회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 수준으로 올리는 제안이신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관련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있는 제도를 법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일단은 이 법안에 대해서 개보위의 입장이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걸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 주시구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대학원위원회가 현재 규정에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건데 이것을 통으로 법안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시행령이 아니라 법안으로 법령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시행령으로 하니까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가 해서요.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분억 인재양성지원과장 구분억입니다.

대학원위원회 실제 운영상에서는 어쨌든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마 핵심은 그 앞의 취소 부분일 것 같은데.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발언한 것처럼 저희가 수정의견을 교육부에 검토 의뢰를 했는데 더 이상의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와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이 법안을 다시 개정을 하든지 입법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시지요.

그리고 정을호 의원님도 이 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거기도 같이 상의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제2항 3항 5항,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및 제9항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고민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5항까지 6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5건의 법률안은 지난번 소위에서 심의를 하셨고요 강경숙 의원안만 직접 회부되어 새로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지난 소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정리해 두었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에 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체급식시설별 근무 공무원 조리사 급여, 배치기준 그다음에 동일 직종의 조리종사자 간 폐암 발병률 비교 이런 내용들은 20페이지 이하에 정리되어 있고요.

일단 3페이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관련 내용은 정혜경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강경숙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혜경·고민정 의원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시설·설비 개선 및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강경숙 의원안은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조리실무사 및 배식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고, 4페이지 5페이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큰 틀에서는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7페이지 이하에서 조문별로 일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 규정 관련해서는 정혜경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정부 수정의견을 8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하여’라는 그 단어에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려는 목적 또한 포괄될 수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리사 조리원 등은 초·중등교육법 21조에 따른 교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9페이지, 시책 수립 및 기본·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정혜경 고민정 의원안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강경숙 의원안에서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시책의 범위를 넓힌 것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규정과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교육부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안의 경우 기본계획·시행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한 정부 수정의견을 10페이지 11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급식시설·설비 및 경비부담과 관련해서 경비부담 조항은 이미 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이고요. 이를 반영한 정부 수정의견이 14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위생·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과 그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학교장 징계요구까지 하게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자인 교육감의 책임과 조금 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징계 부분과 관련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서 약간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역시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는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혜경·고민정·강경숙 의원안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정혜경·강경숙 의원안은 이와 별도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1인당 식수인원 기준 준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7페이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교육청의 자치법규·노동관계법령 등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1인당 식수인원 기준 수립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논의한 대로 정부의 수정의견을 33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김문수 의원안의 목적 조항에 식생활교육을 명시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그대로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45페이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 사용 금지에 관한 조항은 이미 학교급식법에도 기존 조항이 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 각 안이 공포한 날,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 이렇게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독회는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조문별로 부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장님, 한 가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38페이지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었지만 재정 소요 관련해서 추가 재정 소요가 453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내용이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체적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조문별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하나씩 가시지요, 이번에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가 조금 진행을 하면서 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각 단체들에서 반대의견들이 많지 않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의견조회가 있었고 그게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대한영양사협회를 비롯해서 친환경무상급식 폴뿌리국민연대, 여기는 주로 학부모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가면서 여기에 교육부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또 위원님들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8페이지 보시면 목적 및 정의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각 의원별로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먼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우선 목적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정부 수정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뒷부분에 김문수 의원님 안이 또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이 부분을 김문수 의원님 안에서 따와서 이것을 넣어서 8페이지 수정의견처럼 제안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이라는 말이 어디 있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이것은 김문수 의원안 내용이라서……

○**소위원장 고민정**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44페이지의 조문 보시면 김문수 의원안이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인데 ‘교육의 일환으로서’ 부분을 수정안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추가했다. 그러니까 다시 8페이지를 보시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44페이지에 있는 김문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다’ 하는 부분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예.

○**조정훈 위원** 그 의미가 뭐니까?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다’, 그것이 상징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뭐길래 추가가 필요합니까?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급식 문제를 교육의 일환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걸 교육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또 조리사분들이라든가 일하는 분들의 법적 지위도 없고 1인당 식수인원 이런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보조적인 의미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교육의 일환으로 넣어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고 법적 지위도 보장해 가면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중요성을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학교급식이라는 게 급식실에서 그냥 애들이 배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도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잖아요, 이미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녹여낸 것이 ‘교육의 일환이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의 규정에 대해서 정부 측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2조(정의)의 4호……

○**소위원장 고민정** 다시 8페이지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8페이지에 있는데요.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원 등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여기에 대해서는 영양사분들이 이 규정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영양교사든 영양사든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서 급식실 안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학교급식을 조리하시는 종사자들과 똑같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하는 의견이 너무 강해서서, 원래 취지는 모두 다 보호하겠다는 의미였는데 그렇지 않으셔서 그러면 그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 조리사 조리원, 즉 조리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만 정의 규정에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양사 영양교사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없으시면 그다음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관련된 것인데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관련된 것 중에서 시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기본·시행계획 수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중앙 부처 계획의 주기가 개정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5년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0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어떤 게 쟁점이었냐면 ‘학교급식종사자’라는 단어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기록으로 남으니까 제가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제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 단체들 중에 아마 전교조였던 것 같은데요. ‘학교급식종사자’라는 용어가 쓰지 않았던 용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수정의견에도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의견을 수용해서 ‘조리실종사자’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 조리종사자?

○**소위원장 고민정** 조리실종사자. 시행령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려다 보니까 ‘조리실종사자’라는 용어로 수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인데요.

그러면 위원님, 아까 앞의 정의 조항 4호는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주셨으면 해서요. 8쪽입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정의 규정을 따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다른 용어를 집어넣는 것은,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용어를 집어넣는 것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그래도 되겠네요. 제가 하도 단체들의 의견을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정의 규정이 이미 앞의 8페이지에 있으니 10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정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식원 배식도우미 조리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교사까지는 선생님이니까 다르다고 치고 이렇게 다양한데 그러면 ‘조리사, 조리원 등을 말한다’에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조리원과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가 현장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사실은 교육청마다 다른 용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의견을 드렸던 건데 고민정 위원님께서 ‘실무사’라는 게 시행령에 있으니까 다시 좀 살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그것은 앞의 정의 조항에서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하고 정의 규정을 했으니 여기에서도 그냥 학교급식종사자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고민정 위원님이 얘기한 10페이지의 학교급식종사자 이게 큰 틀에서의 선언 문구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럴수록 8페이지로 돌아와서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규정을 꼼꼼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게 빨간색, 파란색 같이 분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쓰는 용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자신들의 조례 등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에 빠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영양교사가 빠지는 것은 다른 취지의 담론인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리사와 조리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실제로는 조리사·조리원분들이 자격증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없으신 경우도 있는데,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고요 조리원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채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조리실무사는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실무사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리사·조리원으로 보면 크게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청에서도 이 용어를 따르게 하면 되지 않아요? 통일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통일하라고 하면 됩니다.

○**조정훈 위원** 조리사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조리원은 조리사를 보조해 주는 사람들입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조리실무사분들을 그냥 어떤 지자체에서는, 조리사 조리원이겠지요. 조리원을 조리실무사라고 부르고?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조리실무사나 조리원 자격증 이런 것은 없고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해했습니다.

배식원 이것도 없고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배식원은 정말 배식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다릅니다. 다른 직종입니다.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너무 바쁘실 때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정훈 위원** 이렇게 하면 조리실무사라는 직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그런데 조리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업무에 따라서 그런 배식하시는 분이나 지원 인력을 다른 명칭을 포함해서 조금 더 지원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조리실무사’라는 이름을 안 써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다 넣어 주는데 왜 조리실무사는 안 넣어 줍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앞의 정의 규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정의 규정.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조리실무사를 넣지요.

○**조정훈 위원**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각 현장에서 다르다면서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는 빠졌네’ 이러면 방금 얘기한 것을 누가, 다 속기록을 읽으실까요?

○**소위원장 고민정** 넣었을 때 생기는 문제 있습니까, 교육부?

○**교육부차관 최은옥** 특별히 문제는 예상되지 않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조리원하고 조리실무사가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잖아요.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 지적대로 두 가지가 다 언급이 되는 게 현실로서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대안을 생각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두 개 다 넣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성준 위원**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이 법의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정의를 내리면 그것이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어의 정리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있다 하면 그 정도로 해서 급식종사자라고 하는 용어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안이 되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앞으로는 조리사 조리실무사라는 용어를 써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법이 맞는 거지 이걸 다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혼선을 부추기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집약적 표현을 써서 정의를 내려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부 의견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박성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렇게 합니까? ‘조리사, 조리원’ 이렇게 합니까?

- 교육부차관 최은옥** ‘조리사, 조리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부서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조리실무사’를 더 많이 쓴다는 것 아니에요?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백승아 위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따르게 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 조정훈 위원** 아니,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써야지요.
- 백승아 위원** 다 각양각색이에요. 더 많은 건 사실 없습니다.
- 소위원장 고민정** ‘조리실무사’를 많이 쓰긴 합니다.
- 조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조리원’으로 왔잖아요, ‘조리실무사’ 대신.
- 소위원장 고민정** 이유가 있잖아요. 교육부 설명 좀 해 주세요.
- 조정훈 위원** 이유가 있어요?
- 강경숙 위원** 그냥 지역마다 다르니까.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예,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가 볼 때 ‘조리사, 조리원’이 보다 좀 일반적인 용어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성준 위원** ‘조리사, 조리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 백승아 위원** ‘조리원’을 가장 많이 써요, 제가 알기로는.
- 조정훈 위원** 그러면 ‘조리실무사’를 ‘조리원’으로 변경하자는 실질적 메시지를 주자는 거지요?
-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부!
-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파악하기로는 17개 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조리실무사’로 쓴다고 저는 보고받았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 그러면 이것은 실무자가 확인을 해 주시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넣는 것으로 합시다. 아시겠지요?
-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고민정** 빨리 파악해 주세요.
-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그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을 5년으로 하나 3년으로 하나 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부는 5년을 제안해 주셨고 저는 3년을 제안했습니다.
-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차원에서 10페이지 제3조에서 ‘학교급식종사자’라는 정의를 넣으셨는데 전교조, 제가 전교조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동일한 개념으로 조리종사자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래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는 ‘조리종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이미 쓰고 있습니까?
- 소위원장 고민정**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시행령에 있습니다.
-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조리종사자와 별개로 학교급식종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학교급식종사자로 변경할 겁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도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자를 학교급식종사자로 변경할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3년인지 5년인지. 11페이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이것은 3년으로 굳이 할 이유가 없이, 교육부 말대로 일상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5년으로 해서 수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사실은 제 의견은 뭐였냐 하면 매년 계획이 나와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5년이면 정권이 한 번 바뀌는 텀이기도 하고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 하는 건데. 저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버거우실 것 같아서 3년 정도로 넓힌 것이거든요. 3년은 불가능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교육부만 세우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이 있으면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시도교육청에서 한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좀 업무 부담이 있어서 5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훈 위원** 5년으로 가시지요.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많이 후퇴하고 다 받아들이는지를. 그러면 5년으로.

○**조정훈 위원** 그게 후퇴가 아니고 조율이라고 해야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제 법안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시면 옆에다 구체화시켰습니다. 정부의 의견이기도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급식시설·설비 부분 보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조정훈 위원** 수정의 내용이 됩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내용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네요.

○**조정훈 위원**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입장은 이거잖아요.

○**전문위원 윤상열** 그것은 경비부담 부분입니다. 그 아래쪽 경비부담 부분 보면 이미 급식시설 관련해서 경비부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고요.

지금 말한 급식시설·설비 관련해서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설비를 갖추라는 내용은 고민정 의원안에 포함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김준혁 위원** 특별히 문제 없으니까 이걸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경비부담 구절은 빼고?

○**전문위원 윤상열** 예.

○**소위원장 고민정**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자 많이 받으셨던 영역일 겁니다.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등등에 대해서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제 법안에 들어가고요. 정부에서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나눠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정부 측 의견을 좀 들어 보지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대로 하면, 일단 식재료의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보다는 학교장이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하지 않는 현행 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제가 이것도 받을 마음으로 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대목은 급식종사자들이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러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경쟁률은 고사하고. 왜? 최저임금 수준으로 너무 낮고 폐암 발병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러면 뻔히 그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다 회자가 되고 있다 보니 어느 누구도 거기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점점 위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냥 통째로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 비율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에 육박합니다. 점점 종사자들 못 구하면 위탁으로 가는 게 많아지겠지요. 위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위탁을 방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 좋은 재료를 하려면 국가가 좀 담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으로 안 하고 국가가 직접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상급식이고.

그래서 이 법안에 논의가 된 것이고 이 종사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식재료 세척·조리, 기준을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지금 혼자서 1인당 한 50명 정도 한다 그러면 감자 다 일일이 깎아서 칼로 다 썰어 가지고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현재는 1인당 한 130명 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라진 감자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환경을 개선을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넣자는 것이었는데 이걸 끝까지 교육부가 반대를 하셔서, 받으실 겁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아니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소위원장 고민정 반대를 하셔서 제가 이 종사자들 설득을 끝까지 겨우겨우 시켰거든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분들한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그런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종사자분들을 이렇게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물론 그렇겠지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그런데 사실 세척·조리 이런 소독 과정이 학생들 식중독 예방이나 건강을 위해서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기준을 넣으면 교육부령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고, 결국 그것에 대한 처벌은 학교장과 영양교사에게 가기 때문에 산안법상의 어떤 조치를 못 한 것과는 상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영양교사들이 책임을 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아시겠지만 대한영양사협회에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나뉜다는 것, 교육감이 져야 되는 책임의 소재가 학교장, 교장선생님들도 요즘 보면 참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훌륭한 리더십을 한 번 더 발휘하셔서 가지고 이것 수용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진짜 피눈물이 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징계 조항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하는 게 정혜경 의원의안이고 정부에서는 이것은 받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법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아닙니다. 같은 학교급식법입니다.

○조정훈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징계조치를 해야지요. 다른 법 위반한 것을 이 법에서 징계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구조상.

○소위원장 고민정 그런데 다 노동자기 때문에 산안법의 규율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산안법 안에서 이 급식종사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법을 따로 만들 수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최종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이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여전히 뭔가 문제가 생기면 조정훈 위원님 말처럼 산안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해당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정혜경 의원님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께서, 특히 교육감님들 그다음에 영양교사님들이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징계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저는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죽 넘어가시면 그다음이 식수인원 관련된 건데 법조문으로 보겠습니다.

29쪽, 이것은 정부가 설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장님, 29페이지는 심의 사항 추가 사항이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뒤에 있긴 한데, 위원님들 보기 편하게 그냥 조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29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안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맨 아래 줄에 있습니다, 정혜경 의원안에. 그래서 학교급식위원회 안에 학부모하고 학교급식종사자 당사자들을 넣자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이미 시행령에 학교급식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학부모는 이미 들어가 있다. 맞지요? 그러면 학교급식종사자만 포함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 법안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만은 아니고요 교육 공무원이 여러 직종이 있는데 특정 직종의 근무환경이나 처우 개선사항을 여기 위원회에 넣어서 심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노동관계 법규 등과 이견이 발생할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학교급식 문제에 다른 직종이 뭐가 들어갑니까, 급식 만드시는 분들 말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급식위원회에 다른 직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공무원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 관련 직종을 넣어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넣기에는 저희가 좀 형평성상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래서 정부는 현행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다 하는 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그다음이 식수인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식수인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식수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조사, 실태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권고하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토론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학교급식위원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안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식수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급식종사자분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의 하나일 텐데, 무슨 말씀인지 저는 큰 틀에서 동의가 되는데 정부가 일단은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그리고 너무 큰 충돌 없이 현장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해서 큰 학교, 작은 학교, 도시 학교, 농촌 학교 등등에 맞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그게 맞고 그것은 교육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감당해

야 될, 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몽땅 지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 책임지고 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맞는데 25페이지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충남 예외 없이, 예외 있나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정훈 위원** 17개 중에 신중검토 의견을 나눠서, 일괄 적용은 과도한 규제라고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17개 교육감하고 충분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각 교육청에 적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종사자분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지금 강제한다고, 법 한 줄 만든다고 세상 그렇게 급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맞다 해서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저도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좋은 일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은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식수인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영향을 받긴 할 텐데요. 이 법을 시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도 급식종사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둔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학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3월인가요? 또 총파업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파업은 없어지는 것인지,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옛날 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처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먼저 설명을 좀 몇 개만 드릴게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현재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평균치를 뽑아 보니까요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이런 데는 100명이 훌쩍 넘어요. 서울이 133, 부산이 123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충남 전북 전남 이런 데는 다 78명, 66명, 87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이런 데들은 설령 이 법안이 강제규정으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는 적정한 인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사람이 많은 서울 경기 부산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교육청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수정안을 제안을 하는데요. 제가 책상에 아마 봐 드렸을 것입니다.

○**김준혁 위원** 다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있으시지요? 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을 보시면 제가 아까 이것은 받겠다 이런 얘기 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4쪽입니다.

이것 ‘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

이게 식수인원에 대한 것인데 빨간 글씨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정하여야 한다’ 혹은 저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까지 해 놔는데 그것도 양보해서 ‘기준을 정한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정혜경 의원안은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한 것에 대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정혜경 의원님 안이고 고민정 의원안은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교육부안은 ‘이것을 지침으로 만들어 권고한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지침은 수준이 한참 낮기도 하고 하물며 그 지침을 그냥 권고한다는 수준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구속력을 조금이라도 올려 주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교육청이 이것을 못 지켰다? 징계 이런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면 안 돼서 어떤 것을 넣었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매년, 매년이 될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식수인원 기준에 한참 미흡한 숫자를 공표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해라라는 국회의 요구를 또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우려들을 말씀하셔서 강제되는 부분은 다 뺐다.

그래서 정리한 것은 기준을 수립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공표함으로써 그래도 좀 잘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는 것이고. 교육부는 이것마저도 부담스럽다고 대통령령은 안 된다고 계속하시는데, 그래서 지침으로 권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권고하는 것 중에 되는 게 별로 없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 수정안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안을 보고 저희가 위원님이 정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고맙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고민정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잘 조율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높게 평가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조리 분야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식수인원이라는 게 학생당 조리인력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조리원당 학생 비율.

○**소위원장 고민정** 조리원 1명당 만들 수 있는 학생 수.

○**조정훈 위원** 그러면 조리사든 조리원이든 관계없는 것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여러 직이 있잖아요, 조리원·조리사. 정의를 할 때 해당이 되는 직군이 됩니까? 조리사입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조리사와 조리원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등’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까 ‘학교급식종사자’라고 되어 있는 그 인원.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조합은 조리사로만 구성되든 조리원으로만 구성되든 관계없습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조리사는 반드시 1인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조리사가 1명이고 조리원이 2~3명인 경우에도 비율을, 그러니까 식수인원이라는 것을 따질 때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조리사·조리원을 합칩니다.

○**조정훈 위원** 다 합쳐서?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면 그게 뭐 50이다, 딱 단수로 하나의 숫자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여러 지역 여건도 좀 고려가 될 수 있고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좀 고려가 될 수 있고.

○**조정훈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지역별, 학교의 그것별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정훈 위원** 이것을 굳이 대통령령으로까지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적정 식수인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100%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위원장님이 주셔 가지고 제가 생각할 시간은 없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지금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교육감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율성을 주니까, 지역·학교·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수립하라고 하면 대통령령을 따르지 못하는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 지역사무소로 와서 불법시위까지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것 시달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 저희 지역사무소 와서 불법시위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 통과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재제안을 드리면요 ⑦ ⑧ ⑨ 하시는데 대통령령은 ‘연구·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교육감과 소통해야 한다’ ‘교육감이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정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두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부 차관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이 ‘대통령령’은 빼고 연구·조사 실시를 강제하고 교육감은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결과를 공표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똑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통령령으로라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돼도요 사람 수를 바로 채울 수 있느냐, 여건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후퇴했거든요.

○백승아 위원 저 질문이 있는데……

○김준혁 위원 잠깐 제가……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김준혁 위원님 먼저.

○김준혁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고민정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학교급식종사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최저임금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또 개인의 건강 문제.

여담입니다만 제 큰아들을 원래 요리사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폴리텍대학 조리학과 보내서 요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 폐암 걸릴 확률들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만큼 급식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수인원의 문제는 노동강도하고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현장 교육청에서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니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책 중의 하나입니다.

○김민전 위원 저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정성국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제시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딱 제안드릴게요.

8번에 나와 있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이것만 딱 빼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요 위에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깔렸어요. 교육감은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대통령령에 따라’를 넣어 버리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여건을 고려하는, 완충이 안 되는 의미의 법이, 의미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절충안을 드리는 것은 7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8번에서 굳이 ‘대통령령에 따라’를 안 넣더라도 교육감의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배치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 일곱 글자만 딱 빼 버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7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여건을 고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지역·학교 여건 고려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보려고 그랬습니다.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그런데 사실 연구를 아직 시작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사실은 지역 여건까지 다 고려를 하면 진짜 전국의 몇백 개가 나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구간이든 뭔가 이렇게 하나의 안, 물론 딱 이것은 아니지만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구간을 좀 정해 주고 그리고 교육청은 그걸 가지고 지역이나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일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범위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예.

○**백승아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령에 그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몇 명 이상부터 몇 명인 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대령으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8번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대령으로 이렇게 범위로 정할 수 있으면, 일괄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식수인원에 대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다른 의원실로도 다 왔을 것 같은데 손 편지가 왔어요. ‘들어와도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고 급식실에 사람 안 들어오고 남은 사람들이 학교급식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사명감으로 약을 먹으면서 출근하고 있다. 1명만 더 늘어도 숨통이 트일 텐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1명만 늘어도 숨통이 트일 텐데’. 정말 그렇거든요. 아이들을 먹인다는 자부심으로 일하시는데 1명만 늘어도 정말 손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수인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고민정 위원님께서 많이 후퇴하시고 대령으로 지역·학교 여건 반영해서 식수인원 정하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받아 주셨으면, 이 정도도 안 넣으면 사실 이 법이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시급한 게 식수인원 조정이에요. 폐암 발병 낮추기 위한 시설 정비도 그렇고 다 중요한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식수인원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조정훈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업무 강도가 너무 세고 그러면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급식을 표방하고 우리가 무상급식을 시작했는데 점점 갈수록 사 먹는 게 냉동식품 주스, 그러니까 막 설탕 덩어리. 애들 그것 지금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게 식수인원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줄어들수록 나물도 무쳐서 먹일 수 있고 국수도 직접 끓여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어 주시면 좋겠어요, 고민정 의원님 안으로. 제야까 질문드린 대령과 지역·학교 여건 고려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면 받아 주십사 의견 표명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김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얘기를 하실 때 방학 때는 임금이 없다 그리고 노동강도에 비해서 너무 임금이 낮다 이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만약에 1인당 식수인원을 낮추면 임금을 더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용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량이 줄어들면 임금을 더 올리기가 어려워지고 노동량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으면 처우를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게 수익자부담 그런 경비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재 김민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중에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것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밑의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두 개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또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제안의 이 수정안 8번 동그라미는 일단은 ‘교육감은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가 아니라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가 맞을 것 같지요? 왜냐하면 아까 조리원 등등 다양한 언어가 있으니까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이 아니라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정합성이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훈 위원** 예.

그리고 다시 대통령령인데요.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대통령령은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치기준을 정하면 아까도 차관님이 언급하셨지만 지금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연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도 딱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식수인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치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배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 하나를 딱 못을 박겠다라는 것은 굉장한,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도 대령은 만드는데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대령이라는 게,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령을 만드는 건데 제시적 의미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령으로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다 고려해서 수립하고 결과를 발표하여야 된다’ 이 정도로 가면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민정 위원장님의 얘기를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위원장 고민정** 좀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잘 이해를 했는가 싶어 가지고.

‘교육부장관은 대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은 똑같은 거고요.

○**조정훈 위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식수인원.

○**소위원장 고민정** 7번, 교육부는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고. 8번, ‘교육감은 대령에 따라 배치기준을 수립한다’인데 8번 이것을 어떻게 바꾸자고요?

○**조정훈 위원** 제가 제안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도 ‘학교급식종사자’로 대체해야 되겠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일단, 예.

○**조정훈 위원** 그래서 7번,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하고 ‘대통령령으로 배치기준을 정한다’. 8번은 ‘교육감은 이 배치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7번은 교육부장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8번 9번은 통합해서 각 교육청마다 기준을 설치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의무를 교육감에게 주자는 거지요.

차관님,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원장 고민정** 8번 9번을 합치자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단어를 바꾸는 건데 조리사·조리실무사 이것을 학교급식종사자로 통일해서 쓰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정훈 위원** 일단 하나, 그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1인당 식수 기준이 아닌 배치기준으로 대체하자는 거지요. 어떠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배치기준이요, 배치기준?

○**조정훈 위원** 예,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게.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이라는 표현 대신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한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수인원 기준은 이 바닥에서 다들 쓰고 있는, 이 바닥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런 용어라, 낯서서서 그렇지 이게 바뀌면 또 혼란스럽습니다. 다들 그냥 식수 기준이라고 하면 알아듣는 단어라 그것은 그냥 가셔야 될 것 같고.

○**박성준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급식종사자하고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규정해 주는 것은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소위원장 고민정** 그리고 8번에 ‘교육감은 대령에 따라서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되어 있는데 ‘대령에 따라’라는 부분을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감이 대령을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대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교육감에게도 그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제로 움직여야 될 것은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유인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간 다른 세상에 있는 교육부장관한테만 모든 책임이 가 버리고, 실제로 그것을 진두지휘해야 될 교육감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은 대령에 따라서 배치기준을 수립한다’로 해서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감은 그 결과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걸 의무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그냥 법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딱 정해 버리면 제일 수월한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어려움 또 교육청들의 난처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그나마도 대령으로 좀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단계가 지침인 건데 위원님들도 지침은 안 되기 때문에 법안으로 많이들 상향 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이다.

제가 다른 것은 다 포기했는데 이것은 진짜 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영역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조정훈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최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7번의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를 ‘학교급식종사자’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의는. 나머지 것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일단 그것은 듣고.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연구·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잖아요. 그 대신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이러면 어때요? 어차피 복수로 나올 거잖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안 됩니다. 교육부장관은 모든 지역의 교육부장관이 아니고 그냥 전체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이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여야 됩니다. 지역별로 다 나눌 수는 없고……

○**조정훈 위원** 그렇게 가려면 아까 교육부차관이,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식수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지역과 학교, 교육청 상황을 고려한 복수의 식수 기준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성준 위원** 아니아니요. 조 위원님, 이게 흐름이 그거잖아. 교육부장관이 이것을 연구·조사하고 그걸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고 적용은 지역의 교육감이 지역·학교 여건을 통해서 또 하는 거고, 이 두 개를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자꾸 섞으려고 하시지?

○**조정훈 위원** 저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박 위원님.

○**박성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장관이 하는 것과 교육감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은 건데.

○**조정훈 위원** 아니지요.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배치기준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나온 기준을 위반해서 또는 어겨서 다른 배치기준을 수립하면 8항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8항이 아니지만……

○박성준 위원 아니아니, 봐 봐요. 대통령령에서 범주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1명 딱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역과 다를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지역·학교, 특히 교육감은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서 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조정훈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따라’를 빼요.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이것은 교육감한테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지역과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자기의 재량권을 활용하여서 그 배치기준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환율도 정해져 있어야 팔 때 얼마고 살 때 얼마가 정해지는 것처럼 그 기준을 정하자는 의미인데 기준을 여러 개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교육감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강해지지요. 그러면 융통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박성준 위원 지금 실시 단계도 아니고 법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연구용역 이게 한 참 걸리겠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 위원님, 법률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딱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이것에 대한 규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연구·조사 결과 또 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 다 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법률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조정훈 위원 ‘학교급식종사자’ 위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그것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고.

○조정훈 위원 그걸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지금 7번 위에도 있잖아.

○소위원장 고민정 말씀드릴게요. 기다려 봐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자꾸 이러는 겁니다. 이것 먼저 하고, 그것 정의 규정은 제가 다 합쳐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41페이지에 보시면 급식법에 ‘영양교사의 배치 등’이라는 7조 조항이 있는데 지금 영양교사들은 조리급식실무자, 조리사 이 사람들에게 대한 법안이 생기면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담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양교사들을 우리가 또 타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러면 여건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교사들은 지금 1명씩 두게끔 돼 있는데 영양교사가 학교별로 숫자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같은 데는, 고등학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점심밥 한 번만 먹으면 되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되는 학교들은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하는 규정입니다. 교육부,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여기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말씀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입장으요 일단 학교마다 이식 하는 학교가 있고 저녁까지 삼식 하는 기숙학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2인 배치한 학교가 있는데요 이것을 개정안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양교사는 공무원이고 행안부에서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도 전혀, 법에 의해 지켜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개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성국 위원님 하고 그다음 백승아 위원님 드릴게요.

○정성국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정하는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신 것 같고요.

○조정훈 위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 허가받아서 법안을 만들라는 소리입니까?

○정성국 위원 표현을 좀 더 정제하시면 좋겠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정성국 위원 일단은 지금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교사 2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36학급 이상.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 급식 밥도 떠 주고 한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교사 선생님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 경감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학급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업무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기준 없이 어떤 학교는 2명 배치해 주고 어떤 학교는 1명 배치해 주고, ‘예산이 안 따라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야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또 근무 여건도 개선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 되는 거예요. 영양교사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학생 1명 1명을 더 살피는 것을 못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36학급 이상에 영양교사 배치, 제가 기억하기에 36학급 이상 학교가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도시에는 좀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입법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교육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 눈치 보면서 법안 만들어야 됩니까? 교육부는 행안부에다 꼭 필요한 법안이어서 우리가 통과시켰으니 이렇게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지, 여기 39쪽에 써져 있는 교육부 입장을 보니까 행안부 입장이 이래요. ‘개별 법률에 교원 확보 기준 일괄 규정 시 정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맞춰 가는 거지 그것을 무슨, ‘정원 수급 문제 고려하지도 않고 배치 근거만 마련하면 실효성 낮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당장 과대 학급 또 이·삼식 제공하는 그 학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2인 배치 의무화 때문에 우선 배치 필요한 학교에 배치 안 될 수 있다’, 그다음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의 의지지요.

그리고 보건교사 같은 경우 36학급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배치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다 배치하지는 않잖아요. 다 배치는 솔직히 안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양교사도 법안 통과시켜 놓고 상황 되는 대로 일단 점점 늘려 가면 되는 거지 무조건 행안부 입장이 이래서 안 된다, 교육부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행안부 기재부 눈치 보느라고 저희가 꼭 필요한 법안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입장은, 교육부에서 그런 워딩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시도교육청 영양교사 추가 배치 수요도 다양하고요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교육청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양교사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조리실 무사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을……

○**소위원장 고민정** 말씀 주시지요.

○**조정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교육부차관님을 좀 질타했지만 문정복 의원님 김태호 의원 두 분이 내신 건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실은 아까 제 고민은 고민정 위원장님 얘기한 그 논리를 갖다 놓으면 영양교사 배치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해 버릴 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 법안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종사자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보한다고 쳐도 영양교사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학생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차관님께서 저희 국회를 과하게 생각해 주셔서 법사위 등에서 문제가 생길 걸 아마 넘기지 암시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의 숙제고요. 진짜로 영양교사 지금 근무환경이 넉넉하고 좋다 그리고 2인 배치되고 과밀학급에도 할 일 없이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교육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법사위 등에서 저희가 인사혁신처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여야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부의 입장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을 지켜 내야 되는 이유가 교육청이 이래저래 써야 될 것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겠다, 지금 행안부에 있는 사람들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그래야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행안부에서 이게 잡혀 버리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 버리면 오히려 영양교사들 문제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에 대한 법안이 다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안 되는 우려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지금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2명을 둔다고 돼 있고, ‘둘 수 있다’로 제가 바꿔 볼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보건교사들도 ‘둔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동일하게 맞추는 게 또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체 교사 수급에 대한 것 교육부가 행안부하고 협의가 다 안 끝난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위원장 고민정** 교사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영양교사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논의가 안 된 겁니까, 지금?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보통 4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 초에 4년 기본계획을

서울 거고 행안부하고는 매년 협의를 하는데요 매년 그걸 상반기에 협의해서 8월쯤에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영양교사 늘리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이렇게 해 놔를 때 행안부는 전체적인 교원 정원 증원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또 축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영향이 하여튼 어딘가는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정하시면, 법을 개정하면 그것은 저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것 완전 거의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협박을 받는 수준이네요.

○김준혁 위원 아니, 여기서 행안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법만 충실하면 되고 행안부는 우리가 장관한테 이야기하든 정책보좌관이나 관련해서 이야기하든 그건 그 추후 문제고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법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겁니다. 더 논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정훈 위원 고민정 위원장님의 고민도 실은 이해는 되지만 법안소위, 법사위 다들 경험 있으시니까, 재선 위원님들은 수정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의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엑스, 100% 아니면 엑스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빼고 가자 저는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료 38페이지 개정안 내용 학교급식법 제7조 밑줄 친 것에 보면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적절한 문구입니다. 이미 들어 있네요, 학교급식법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아까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고 교육감은 이걸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소위원장 고민정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자꾸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같은 얘기인데.

○조정훈 위원 어쨌든 영양교사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영양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의 조율이 필요하기는 한데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 여야 위원들도 아마 다 달려들어서 영양교사 부분을 확보해 주는 답을 이끌어 내는 데 책임을 저 주시리라 생각하고.

조정훈 위원님, 그럴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고민정 기록에 남기면서, 그러면 이것도 영양교사 2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누구 안으로 할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리고 제가 아까 정의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다 시 댄 앞으로 돌아가야 돼서 제가 자꾸 뒤로 미룬 건데요.

학교급식종사자라는 용어는 법령에서는 없었던 건데 이것을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조리원 등을 하나로 묶어 내기 위해서 학교급식종사자라는 정의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었더니 전교조 등에서는 없는 용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왜 하나 하는 비판이 워낙

많아서 다른 조항들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으로 다 녹여 내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 학교급식종사자로 바꾸면 되는데 왜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로 써 있냐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다들 혼선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들도 갖고 계시니 앞의 정의 조항에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조리사, 조리실무사, 조리원’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교육부 팬찮으신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아까 위원장님이 조사해 보라고 하신 것 보니까 ‘조리실무사’ 용어를 12개 교육청이 쓰고 있고요. ‘조리원’은 4개 교육청, ‘조리실무원’은 1개 교육청이 쓰고 있어서 ‘조리실무사 등’으로 해도 팬찮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그냥 위원님들 의견 따르겠습니다.

조리실무사가 조리원보다는 더 많다는 건데 그러면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으로 할지……

○**박성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조리원을 빼고?

○**소위원장 고민정** 예, 사실은 그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면 ‘조리사, 조리실무사’.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전교조 등등, 우리가 전교조를 그렇게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소위원장 고민정** 신경 쓰세요. 신경 쓰셔야지.

○**조정훈 위원** 행안부 신경 안 쓰듯이 전교조 신경 1도 안 쓰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 나눠 주신 것을 고수하시려면 고민이……

○**소위원장 고민정** 고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대체하겠다고?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더 깔끔해지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상열** 예.

○**소위원장 고민정**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44페이지는 앞에서 소화했고요.

○**조정훈 위원** 식생활교육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42페이지.

○**소위원장 고민정** 그것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44페이지 것은.

그다음에 47페이지,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관련된 부분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 사용 금지는 저희가, 부적합한 농수산물을 쓰는 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미 다른 법에서 부적합한 경우에 유통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추가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미 다 되고 있다?

○**김문수 위원** 예, 빼도 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습니까?

○**김문수 위원** 예, 다른 법에 다 있으니까.

○**박성준 위원** 이미 다 들어가, 내용에 있을 것 같아.

○**소위원장 고민정** 빠른 논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장님, 44페이지에 보면 제1조(목적) 조항 말고도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임무라든가 학교급식 운영평가에도 일부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이것은 목적에 교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법체계상?

○**조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 읽어 보시면 예를 들어서 44페이지 18조에 학교급식 운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운영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평가를 하는데 영양·식생활교육도 평가해요.

○**소위원장 고민정** 당연히 해야지요. 애들이……

○**조정훈 위원** 그런데 영양교육은 영양교사의 영역입니다.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영양교사까지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영양교사 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고민정** 들었어요. 운영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교육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정훈 위원** 급식 부실을 영양교사의 평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면 1조(목적)과 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이견이 없으니까 그것은 넣는 것으로 하고, 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에서 교육 부분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박성준 위원** 현행 안으로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조정훈 위원** 그대로, 바꾸지 말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넣어도 괜찮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조정훈 위원** 빼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빼는 것으로?

○**조정훈 위원** 예, 영양교사들 또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1조, 3조만 바꾸고 18조는 안 바꾸고.

○**소위원장 고민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칙입니다.

부칙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부칙은 저희가 연구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27년 7월 1일 시행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성준 위원** 27년으로 해 달래요, 27년 7월 1일부터. 정부 수정의견으로.

○**소위원장 고민정** 아, 27년 7월 1일 정부 수정안으로?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수정의견으로 가는 걸로.

전문위원님 처음부터, 혹시 빠지거나 정리해야 될 게……

○**전문위원 윤상열** 41페이지, 2인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조문을 문정복 의원안 김태호 의원안 중 어떤 것으로 하실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상열** 기준 자체가 문정복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김태호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문정복 의원안이 합리적이네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럴 것 같은데요.

○**김준혁 위원** 2회는 많은 학교들이 1일 2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3회라면 모르겠지만 2회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 맞습니다. 문정복 의원안에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일정 규모가 다 포괄적인 의미니까.

○**전문위원 윤상열** 그러면 문정복 의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조정훈 위원** 한번 짚 정리해 주실까요, 이것?

○**전문위원 윤상열** 예.

먼저 8페이지, 제1조(목적) 조항은 정부 수정의견대로 의결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조리원’이 아니고 ‘조리실무사’로요.

○**전문위원 윤상열** 예.

그리고 제2조 4호 정의는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는 빼는 걸로……

○**조정훈 위원** 그렇게 확확 가지 말고 하나씩, 지금 8페이지 끝났고.

○**소위원장 고민정** 11페이지.

○**조정훈 위원** 11페이지는 5년으로 가는 거고.

○**소위원장 고민정** 기본계획 수립은 5년으로 하고 정부안으로 가는 겁니까.

○**조정훈 위원** 지금 정부안이 아닌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상열**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하나씩 봐야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11페이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5년 주기로 하기로 하셨고 포함되는 사항은……

○조정훈 위원 정부안 받고?

○전문위원 윤상열 예, 그대로 수용을 하셨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14페이지.

○전문위원 윤상열 그다음에 14페이지, 급식시설·설비에 관해서는 고민정 의원안 ‘위생적·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하여’로 동의를 하셨고요. 경비부담은 포함하지 않고 현행 조항대로 가는 내용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위생·안전관리 관련해서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과 마찬가지로 가기로 동의하셨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징계 부분 관련해서도 포함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가기로 말씀하셨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다음에 29페이지.

○전문위원 윤상열 29페이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사항은 현행과 같이 추가하지 않는 걸로 논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3·34페이지, 1인당 식수 기준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내려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소위원장 고민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동의를 해 주셨으니깐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워딩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바꾸는 겁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내렸으니깐.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조정훈 위원 ‘연구·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이런 건 다 빠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그래도 뭘 근거로 했는지 하는 거니까요.

○조정훈 위원 뻔한 거지.

○소위원장 고민정 뻔하지만 법에 없으면 또 나중에 안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은 대령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한다’.

그다음 9, ‘교육감은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문위원 윤상열 7·8·9항을 그대로 반영하되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용어만 ‘학교급식종사자’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영양교사의 배치는 문정복 의원안을 반영하는 걸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제1조(목적)과 제3조는 반영하고 제18조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논의하셨습니다.

그리고 47쪽,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 사용 금지도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부칙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됐습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됐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13페이지 보시면 시설·설비 여기서 일단 의원님 안을 저희가 받는 걸로 의견을 냈는데요. 그 이후에 1항에 대해서 단체들의 의견이 좀 들어와서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일단 제 법안은 급식시설·설비 안에 이런 조항을 넣는 건데 정부는 고민정 의원안과 같음이 아니라 이것도 하지 말자, 맞지요? 정확하게.

○교육부차관 최은옥 현행 유지.

○소위원장 고민정 현행 유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리고 밑에 있는 경비부담도 현행 유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현행 유지.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게 2개 다 현행 유지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네요. 땅 한 100층은 판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현행 유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급식법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당겨서 같이 붙여서 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교육부는 2010년 국회 지적을 받은 이후 2014년부터 식재료 입찰공고에 입찰참가 제한 문구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 제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법령상 근거 없이 식재료 입찰참가의 기회를 제한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페이지, 다만 교육부 수정의견을 보시면 식재료 관련 법령에 원산지 표시의무와 관련된 법률을 추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의 운영체계 등을 반영해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의견을 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것 토대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1항에 음영 처리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2항은 저희가 단체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정해야 돼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수정의견으로 문제없는 것 같은데요.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교육부의 수정의견에 다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그리고 제21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못 한 것 하나 있었잖아요. 붙여서 해야 되는 것이, 고등교육법 그것 넘겼나요?

○**행정실장 김성수** 다 의결했습니다. 남은 것 없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남은 것 없나요?

○**행정실장 김성수** 예.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제 대안교육법안……

○**박성준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위원장님.

○**김민전 위원** 여기까지 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왜 내 법안만 논의 안 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 위원장님 이러면 안 되지요.

○**백승아 위원** 뒤에 저희 것도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대안교육 이 법을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러면 안 되지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고민정** 오늘은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또 각자 의원 복지를 위해서……

○**조정훈 위원** 다음번에 무조건 통과시켜 주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다만 12월 안에 법안소위를 꼭 열어 주실 것을 조정훈 위원님께 간절히……

○**조정훈 위원** 또 하자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래야 12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12월에 국민의힘에서 필버를 계속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렇지요.

○**조정훈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고민정** 다음번에 또 한번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장시간 동안 회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민전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